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-12조제5호 중 “제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10호 및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”로 한다.

제3-13조제3항 중 “제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10호 및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”로 한다.

제3-13조의2제1항 중 “제3-14조제10의2호 단서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

제3-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3-17조제1항제1호 중 “제3-14조제4호자목”을 “제3-14조제1항제4호자목”으로 한다.

제3-22조제1항제5호 중 “제3-14조제7호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7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9호가목 중 “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4호 및

제3-14조제1항제4호의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0호 중 “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”를 “제3-14조제1항제4호 및 제3-14조제1항제4호의2”로 한다.

제3-24조의2제1항 “제3-14조 제4호바목”을 “제3-14조제1항제4호바목”으로 한다.

제3-62조제1항제1호 중 “제3-14조”를 “제3-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-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-12조(가산항목) 제3-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,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<u>제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</u>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	<p>제3-12조(가산항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-14조제1항제10호 및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-13조(후순위차입금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제3-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<u>제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</u>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 (후단 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-13조(후순위차입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3-14조제1항제10호 및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</u>----- ----- ----- --. (후단 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-13조의2 (자본증권) ① 다음 각</p>	<p>제3-13조의2 (자본증권) ① -----</p>

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-14조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.

1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3-14조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 (후단 생략)

④ (생략)

제3-14조(차감항목)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1. ~ 17. (생략)

<신설>

제3-17조(금리위험액의 산정) ① 제3-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
----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-----

-----제3-14조제1항제10호 단서-----

----- (후단 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-14조(차감항목) ① -----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3-17조(금리위험액의 산정) ① ----

1.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 제3-14조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, 기업어음(CP), 자산유동화증권(ABS, ABCP), 양도성 예금증서(CD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

2. ~ 4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제3-22조(신용위험액 산정) ① 제3-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채무보증(제3-14조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,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)

6. ~ 8. (생략)

9. 사모사채.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제3-14조제4호자목 및 제3-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다. (생략)

10. 대출채권(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1.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 제3-14조제1항제4호자목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-22조(신용위험액 산정) ①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(제3-14조제1항제7호-----
-----)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-----.

가. 제3-14조제1항제4호 및 제3-14조제1항제4호의2-----

나. 제3-14조제1항제4호자목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(제3-14조제1항제4호 및 제3-14조제1항제4호의2-----
-----)

11. ~ 1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-24조의2(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) ① 제3-14조 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3-62조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)

① 합병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 제3장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% 해당금액을 제3-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.

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-24조의2(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) ① 제3-14조제1항제4호
바목-----

-----.

② ~ ④ (생략)

제3-62조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제3-14조제1항-----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